

소속변경에 관한 규정

1997.03.01.제정	1997.10.28.일부개정	1998.09.01.일부개정	1998.12.01.일부개정
2000.07.01.일부개정	2004.03.01.일부개정	2005.06.01.일부개정	2006.03.01.일부개정
2010.03.01.일부개정	2011.04.18.일부개정	2011.11.01.일부개정	2012.03.01.일부개정
2012.08.01.일부개정	2015.01.29.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18.07.23.일부개정
2020.07.01.일부개정	2021.03.01.일부개정	2021.09.01.일부개정	2022.01.06.일부개정
<u>2024.03.12.일부개정</u>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21조에 따른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속변경이라 함은 본 대학교 내에서 학생의 학부(학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

제3조(지원자격 및 시기) ① 소속변경 신청자격은 입학·편입학 후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5.1.29., 2018.7.23., 2020.7.1., 2021.9.1., 2022.1.6., **2024.3.12.**)

② 소속변경의 신청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8.7.23., 2020.7.1., **2024.3.12.**)

③ 소속변경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기 개시 이후에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7.1., 개정 **2024.3.12.**)

제3조의2(선발계획 및 선발기준) ① 소속변경 대상 학부(학과)는 학년별 선발인원, 전형방법, 세부 전형일정 등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부(학과)는 그 특성에 따라 성적, 취득학점 수, 면접, 실기, 포트폴리오, 적성검사, 기타 등의 선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7.1.]

제4조(허가범위) ① 미래융합대학 소속학과 재학생은 미래융합대학 내에서만 소속변경이 가능하며 미래융합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부(학과) 학생은 소속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 소속학과로는 소속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3.1., 2020.7.1., 2021.3.1., 2021.9.1., 2022.1.6., **2024.3.12.**)

② 소속변경의 허가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3.1., 2020.7.1., 2021.3.1., **2024.3.12.**)

③ 삭제 <2018.07.23.>

④ 학부 모집단위의 경우 소속변경 학년에 해당하는 전공으로 소속변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3.1.)

제5조(절차) 소속변경 지원자는 정해진 기간에 소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생이 지원한 소속 변경 학부(학과)는 선발기준에 따라 소속변경 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1.4.18., 2012.8.1., 2018.07.23., 2020.7.1.)

제6조(승인) 전입하는 학(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소속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교과이수) 소속 변경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및 이수기준은 소속 변경한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20.7.1.]

부 칙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지원자격 및 시기)는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7.1.>